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1 선고 2018가단5501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3. 7.

판결 선고 2019. 3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5,468,493원과 그 중 95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8. 17.부터 2019. 1. 1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진영

별지